

일반음식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총칙)

육군 6755부대(이하 “부대”)과 시설 사용인(이하 “사용인”)은 강철회관 1층 일반음식점(이하 “일반음식점”이라 한다) 사용허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조건의 이행)

“부대”와 “사용인”은 본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 ① 운영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하며, 운영시간은 운영협약서에 명시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용인”은 무단휴업을 할 수 없으며, 개인사정으로 임시휴업이 필요할 시,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얻은 후 임시휴업 할 수 있으며, 휴무 사실 및 휴무 기간을 3일전에 시설 출입문에 부착하여 게시한다.
- ③ “사용인”이 운영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대”에 사전 통보하고 부대복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사용인”은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사용인” 부담으로 완료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영업개시가 불가할 시 부대와 협의하여 영업개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판매품목 및 가격)

- ① 판매품목은 커피 등 식품으로 하며, 세부 품목 및 가격은 부대와 상호 협약을 통하여 정해야 한다.
- ② “사용인”은 판매품목, 판매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사항에 대하여 “부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부대” 및 “사용인”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운영협약서를 수정 및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이 취급하는 품목의 가격은 시중 유사업종의 가격보다 동일 또는 저렴해야 한다.
- ④ “사용인”은 운영시간, 품목 및 가격표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사용인”은 영수증 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사용인의 허가조건 준수 의무 등)

사용인은 부대의 본 특수조건 및 협약서 준수 여부 점검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법규 위반사항 또는 허가조건 및 협약서 미 준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①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② 군사기밀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방보안업무 훈령, 보안규정 등 보안관련 법규
- ③ 안전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 ④ 해당업종의 영업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

제6조(자료의 제출 요구)

- ① “사용인”의 사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대”는 “사용인”에게 당해 영업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인”은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조정)

“사용인”은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면제 또는 조정을 “부대”에 요청할 수 없다.

제8조(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제한사항)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군 부대 특수성에 의한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허가 시설 이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에 사용료 조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국가적 재난 선포, 전시예 준하는 사태 발생, 훈련·검열 등 시행
2. 대비태세 유지, 보안 등의 사유에 의한 운영시간 통제

제9조(투자설비 등 처리)

“사용인”은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사용허가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취소 또는 철회일)까지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관리)

- ①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위생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부대 또는 행정관서의 위생·안전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위생 및 화재·가스 등의 안전과 관련한 “부대” 또는 관련 행정관서의 시정 요구시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식중독 사고, 화재사고와 같이 “사용인”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④ “사용인”은 사용허가서 발급 이전 허가기간 동안의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비용의 부담)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부담을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미설치의 경우 “부대”에서 지정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한 공공요금을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허가시설 공용면적에 대한 청결유지 비용은 점유면적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조건 및 운영협약 위반 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이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1차 위반 : 허가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주의 조치
2. 2차 위반 : 1차 주의 조치 관련 내용 불이행 및 기타 위반내용 발생 시에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

3. 3차 위반 : 사용허가 철회

제13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부대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비추어서도 과도하게 상태를 변경하는 것
2. 공공시설 및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의 변경(유흥업종 불가)

제14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이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인”에게 있다.

제15조(허가기간의 갱신)

“사용인”은 허가기간 갱신을 희망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부대”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부대”는 특수조건 또는 협약사항 위반사례,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부대복지운영위원회를 통해 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사용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의 책임)

“사용인” 및 “사용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은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 보안업무훈령」, 해당 부대 보안규정 및 기타 군사보안 업무에 관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여론조사에 대한 조치)

“부대”는 “사용인”의 영업과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격 및 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부대”가 이에 따른 시정 및 개선 사항을 조치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 ① “사용인”은 “사용인” 귀책사유로 이용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대”에서 제공한 건물, 설비, 비품 등을 훼손, 망실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기획재정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부대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0조(운영협약서 체결)

- ① “사용인”은 운영일, 판매·서비스 품목 및 가격, 공공요금 징수 등에 대하여 “부대”와 별도의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부대”와 “사용인”은 필요한 경우,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 후 운영협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영협약서 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대”는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상의 지위양도 금지)

“사용인”은 “부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사업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2조 (사용허가 종료 후 원상회복)

- ① “사용인”은 사용허가가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목적 시설물을 “부대”에게 사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반환 및 원상복구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의 “부대” 또는 “신규낙찰자”에 대한 권리금 등의 기득권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해결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